● 제298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

#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12. 1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 김인호 의원 발의 】

의안번호 1405

## Ⅰ. 조례안 개요

###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가. 제 안 자 : 김인호 의원 (찬성 12명)

나. 제 안 일 : 2020. 4. 3.

다. 회 부 일 : 2020. 4. 8.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및 홍보 실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후단에 “(이하 “법”이라 한다)”를 추가하여 추후 개정 시 입법기술 상 효율성을 높임.(안 제4조)

○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할 것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5조의3)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충청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기여하는 한편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사항 검토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및 홍보 실시 (안 제2조제5호 등)**

○ 개정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 제11조의2[1]에 따라 시장으로 하여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임.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

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12.]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 최초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을 기념하여, 2012년 12월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세계 위안부의 날’로 정하였고, 2013년부터 ‘세계 위안부의 날’을 기념하여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과 행사가 진행되어 오다가, 2017년 12월 「위안부피해자법」의 개정을 통해 매년 8월 14일을 기념일로 지정하였음.

- 서울시는 「위안부피해자법」과 현행 조례(제5조의2)[2]를 근거로 2019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기념하여 기증받은 기림비를 남산 회현자락 옛 조선신궁터 부근(회현동1가 100-266)에 설치하고 기림비 제막식 등의 행사를 추진한 바 있음.

○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기념하고 홍보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함께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임.

---

2)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제5조의2(기념사업 등)** ①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 사업**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3 종합 의견

○ 상위법 개정사항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기념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인정됨.

-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함께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임.